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0. 2. 1
기획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위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1월 8일

◦ 회부일자 : 2000년 1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 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00. 1. 29)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승 기)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물품관리부서 및 관직을
재정비하고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변경된 예산과목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직개편으로 인한 물품관리부서 및 관직 지정을 변경
 - 총무과 ⇨ 재무과, · 총무과장 ⇨ 재무과장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 관서당 경비 ⇨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종 만)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99. 9. 7 직제 개편에 따라 총무과의 경리, 계약담당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물품관리부서를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관직은 총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려는 것이며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물품매입은 관서당경비의 목이 폐지되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변경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려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필요한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제1항중 “관서당경비”를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총무과”를 “재무과”로 한다.

제30조중 “총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이하생략)</p>	<p>제10조(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①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현행과 같음)</p>
<p>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생략) ②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입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입물품출납원)이 행하고 <u>총무과</u>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라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p>	<p>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생략) ② <u>재무과</u> (현행과 같음)</p>
<p>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전보고)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u>총무과</u> <u>장</u>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p>	<p>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전보고) <u>재무과</u>장</p>

關係法令拔萃

【지방자치법】

제21조(보고)조례나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조례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규칙에 있어서는 공포예정 15일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보고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①도지사는 모든 물품의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